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송재봉의원 대표발의)

| | |
|----------|-------|
| 의안 번호 | 15681 |
|----------|-------|

발의연월일 : 2025. 12. 29.

발의자 : 송재봉 · 박지원 · 전용기
김문수 · 황명선 · 박정
이주희 · 안태준 · 박정현
강득구 · 남인순 · 김우영
김기표 · 윤종군 · 박지혜
이용선 · 김남희 · 최혁진
의원(18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북한이탈주민의 신속한 적응 · 정착을 위해서 국민연금 최저가입기간(5년 단축) 특례 등 각종 보호 · 지원 사항을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북한이탈주민의 경우 국민연금에 대한 이해 부족, 열악한 경제 상황 등으로 국민연금 가입률이 저조함에도 불구하고 국민연금 가입에 대한 행정적 · 재정적 지원 규정이 미비하여 북한이탈주민의 국민연금 가입 유도를 통한 노후 보장에 한계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보호대상자에 대한 국민연금 가입 지원 및 국민연금 보험료 최초 1개월 납부분 지원을 신설하여 규정함으로써 국민연금 가입률을

제고함과 아울러 북한이탈주민의 노후 소득 보장에 기여하려는 것임
(안 제11조제4항 및 제26조의2제3항 신설 등).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제1항에 따른 기관의 장은 보호대상자가 정착지원시설에서 보호 받고 있는 동안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호대상자의 국민연금 가입에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

제26조의2의 제목 “(국민연금에 대한 특례)”를 “(국민연금에 대한 특례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을 제4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통일부장관은 국민연금에 가입하려는 보호대상자(「국민연금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연금보험료를 지원받고 있는 보호대상자는 제외한다)의 경제적 능력 등을 고려하여 「국민연금법」 제88조에 따라 보호대상자가 부담하여야 하는 연금보험료 중 최초로 부담하여야 하는 연금보험료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원할 수 있다.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연금보험료 지원에 관한 적용례) 제26조의2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국민연금을 가입하려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신·구조문대비표

| 현 행 | 개 정 안 |
|----------------------------------------------------------|------------------------------------------------------------------------------------------------------------------------------------------------------------------------------------------------------------------------------|
| 제11조(정착지원시설에서의 보호 등) ① ~ ③ (생 략) <u><신 설></u> | 제11조(정착지원시설에서의 보호 등)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제1항에 따른 기관의 장은 보호대상자가 정착지원시설에서 보호받고 있는 동안 대통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호 대상자의 국민연금 가입에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 |
| 제26조의2(국민연금에 대한 특례) ① · ② (생 략) <u><신 설></u> | 제26조의2(국민연금에 대한 특례) 등) ① · ② (현행과 같음) ③ 통일부장관은 국민연금에 가입하려는 보호대상자(「국민연금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연금보험료를 지원받고 있는 보호대상자는 제외한다)의 경제적 능력을 고려하여 「국민연금법」 제88조에 따라 보호대상자가 부담하여야 하는 연금보험료 중 최초로 부담하여야 하는 연금보험료를 대통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원할 수 있다. |
| ③ (생 략) | ④ (현행 제3항과 같음) |